서울특별시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

(강감창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1953

발의년월일 : 2017년 8월 9일
발 의 자 : 강감창 의원(1명)
찬 성 자 : 김미경, 김용석(도봉), 김영한, 김용석(서초), 김진철, 맹진영, 박마루, 박성숙, 박중화, 서윤기, 성중기, 신건택, 오봉수, 우형찬, 유동균, 이명희, 이신혜, 이윤희, 이현찬, 주찬식, 최호정, 황준환 의원(22명)

1. 제안이유

중앙정부는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을 제정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 및 경영 현대화 등 다양한 지원·정비정책을 추진하고 있음.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은 전통시장의 구성원으로서 상권형성을 함께 해 온 전통시장 거리가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임.

전통시장 거리가게는 전통시장의 매력과 활력을 높이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으며, 또한 거리가게와 지역사회의 갈등해소를 위한 상생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상생의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.

이에 전통시장 거리가게에 대한 관리를 통해 전통시장의 이용편의성을 제고하고, 전통시장 거리가게 및 지역 상권의 상생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“전통시장 거리가게”를 전통시장 및 그 인접지역에 있는 노점으로서 소규모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로 규정함(안 제2조).

나. 시장은 전통시장 거리가게의 관리 및 상생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, 관리계획의 수립 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(안 제4조).

다. 시장은 전통시장 거리가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, 자치구에서 실태조사를 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.

라.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및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및 시범사업에 대한 시장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(안 제6조).

마. 관리계획의 수립,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및 상생환경 조성사업, 시범사업, 가이드라인의 수립 등에 대한 심의·자문을 위해 전통시장 거리가게 상생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.

바.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.

사.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등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상인조직 또는 전통시장 거리가게 상인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　　타 :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전통시장 거리가게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전통시장의 환경 개선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, 전통시장 거리가게와 지역 상권의 상생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전통시장 거리가게”란 「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그 인접지역에 있는 노점으로서 소규모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전통시장 및 그 인접지역의 환경과 전통시장 이용자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거리가게를 개선하고, 거리가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및 상생환경 조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관리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전통시장 거리가게의 관리 및 상생환경 조성을 위해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및 상생환경 조성계획(이하 “관리계

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시장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
제5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전통시장 거리가게 운영자 및 점유면적 등에 대한 거리가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실태조사의 시기·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시장은 자치구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법인,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및 상생환경 조성사업 등) ① 시장은 자치구가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및 상생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전통시장 거리가게 개선 및 지원
2.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및 상생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교육
3. 전통시장 거리가게 소재 지역의 상권 활성화 사업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시범사업은 자치구에서 신청한다.

제7조(전통시장 거리가게 상생위원회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거리가게 상생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
3. 제6조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, 시범사업의 평가 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
4. 제8조에 따른 세부사항의 수립에 관한 사항
5.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련 분쟁 발생 시 조정·협의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시장이 전통시장 거리가게의 관리 및 상생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시의원, 전통시장 거리가게 대표, 상인 대표, 해당 지역주민 대표, 관련 분야의 전문가,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, 당연직 위원은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실·국장 및 본부장이 된다.

④ 당연직 및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공무원이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

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

2.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8조(사업추진 가이드라인) 제6조에 따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9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전통시장 거리가게 상인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

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5조(실태조사), 제6조(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및 상생환경 조성사업 등), 제7조(전통시장 거리가게 상생위원회), 제9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에 따라 비용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[제5조(실태조사), 제7조(전통시장 거리가게 상생위원회) 해당]

1) 추계결과 ≒ 268,000천원

○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연평균 53,600천원임

○ 추계의 전제

- 비용은 2018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
- 전통시장 거리가게 상생위원회 위원은 19명으로 구성
- 전통시장 거리가게 상생위원회는 분기별 1회 운영
- 실태조사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전제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2) 상세 비용추계 결과

○ 총 비용(합계) ≒ 268,000천원

- 총비용 = 실태조사비 + 상생위원회 운영비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 (2018)	2차년도 (2019)	3차년도 (2020)	4차년도 (2021)	5차년도 (2022)	합계
세입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실태조사비 (제5조)	44,000	44,000	44,000	44,000	44,000	220,000
	상생위원회 운영비(제7조)	9,600	9,600	9,600	9,600	9,600	48,000
	소계(b)	53,600	53,600	53,600	53,600	53,600	268,000
□총 비용(b-a)		53,600	53,600	53,600	53,600	53,600	268,000

○ 실태조사비 ≒ 220,000천원

- 실태조사비 = $\sum_{i=1}^{5}(\text{연간비용})_i$

  $_i$ = 비용추계 연차(2018년~2022년)

- 연간비용 ≒ 44,000천원
- 실태조사는 연 1회 실시 전제
-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효과분석 조사비를 적용하여 추계

○ 상생위원회 운영비 ≒ 48,000천원

- 심의위원회 운영비 = $\sum_{i=1}^{5}(\text{연간비용})_i$

  $_i$ = 비용추계 연차(2018년~2022년)

- 연간비용 ≒ 9,600천원

  ·참석수당 : 150천원×16명×4회 = 9,600천원

  ▸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시의회 의원 1명, 경제진흥본부장 1명, 경제기획관 1명 등 3명은 참석수당 지급 비대상

※ 서울특별시 2017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(p153) 및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(p134)참조

▸참석수당 : 기본 100천원(2시간 이내), 초과 50천원

나. 기술적 추계 곤란

○ 같은 조례안 제6조에 의한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및 상생환경 조성사업, 제9조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의 경우, 사업 범위, 대상 등을 특정하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예산정책담당관
담 당 관	남승우
정책조사팀장	여차민
예 산 분 석 관	이정수

☏ 02-3705-1280

e-mail : intezer@seoul.go.kr